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910
----------	------

2021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1년 10월 15일

다. 회부일 : 2021년 10월 20일

라. 상정일 :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11월 26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대현 평생교육국장)

### 가. 제안이유

-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고자 함.

※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함(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2조)

- 본 센터는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 인식개선 사업, 정책연구, 네트워크 구축, 지원대상자 발굴, 상담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시설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는 전연령 대상 시설로서 이용자 특성이 다양하며 경계선지능인 선별, 본인 및 가족 상담, 사례관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됨
  - 경계선지능인 관련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 ○ 위탁개요

-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관리 운영
-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2022. 4. 1. ~ 2024. 3. 31.)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선정(신규위탁)
- 소요예산(위탁금) : 1,275백만원('22년)
  - 인건비 399백만원('21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원)
  - 운영비 376백만원(인테리어 및 사무기기 등 구입, 공공운영비 등)
  - 사업비 500백만원(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인식개선 사업 등)

## ○ 위탁사무 내용

-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교재·교구·매뉴얼 등 개발
- 지원대상자 발굴 및 선별, 상담 및 지원, 사례관리, 가족상담
-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 네트워크 구축, 인식개선 사업
- 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등

## ○ 시설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예정)
- 규 모 :  $300 m^2$  내외
- 공간구성(안) : 교육장, 상담실, 사무실, 이용자 휴식공간 등
- 이 용 대 상 : 경계선지능인 및 그 가족, 관련기관 종사자 등

##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민간위탁 예산편성 예정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가. 민간위탁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을 지원할 근거(「서울특별시 경계선증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이를 2년간民間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음.

####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개요 〉

-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관리 운영
- 소재지 : 서울시(예정)
- 규모 : 300m<sup>2</sup> 내외
- 공간구성(안) : 교육장, 상담실, 사무실, 이용자 휴식 공간 등
- 이용대상 : 경계선지능인 및 그 가족, 관련기관 종사자 등
-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2022.4.1. ~ 2024.3.31.)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선정(신규위탁)
- 소요예산(위탁금) : 1,275백만원(2022년)
  - 인건비 399백만원('21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원)
  - 운영비 376백만원(인테리어 및 사무기기 등 구입, 공공운영비 등)
  - 사업비 500백만원(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인식개선 사업 등)

-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본 센터’)」는 시설형 위탁 방식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2년간(2022.4.1.~2024.3.31.) 경계선지능인 관련 단체 또는 유사분야(발달장애인, 느린학습자 등)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비영리단체)에 위탁할 계획임.

##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 ○ 민간위탁 추진과정

- 2020.10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 2021.9.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 · 운영 계획
- 2021.9.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 향후 계획

- |                          |                |
|--------------------------|----------------|
| · 시의회 동의                 | : 2021년 11월    |
| ·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 : 2022년 2~3월   |
| · 위·수탁 협약 체결             | : 2022년 4월     |
| · 센터 인테리어 및 직원채용 등 운영 준비 | : 2022년 4월~5월  |
| · 센터 개관                  | : 2022년 6월(예정) |

- 평생교육국은 본 센터의 설치를 경계선지능인 관련 거점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타 기관과 교류·협력 및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확정할 예정임.

##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시설개요 〉

### ○ 시설명 :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 ○ 설치방향

- 거점시설로서 타기관 교류·협력이 용이한 곳에 위치
- 이용자 특성 및 접근성을 고려해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선정

### ○ 위치(안) : 중구 삼일대로 장교빌딩(민간건물) ※ 2022년 임차 추진

- 을지로입구역 및 을지로3가역 도보 3분 거리, 지하 4층/지상 27층

### ○ 시설규모(안) : 임대면적 607.4m<sup>2</sup>(183.7평) / 전용면적 : 303.7m<sup>2</sup>(91.8평)

### ○ 공간구성(안) : 교육장, 상담실, 사무실, 이용자 휴식공간 등

- 본 센터는 3개팀 14명으로(센터장 1명, 연구개발 5명, 사업1팀 4명, 사업2팀 4명) 구성할 예정에 있으며, 총 12억 7천 5백만원의 예산으로 프로그램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진로 탐색, 생활교육, 기술교육, 현장실습 등을 청소년 및 청장년에게 제공할 계획임.

##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 평생교육국은 본 센터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이용자 특성이 다양하며 경계선지능인 선별, 본인 및 가족 상담, 사례관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로 낮은 주의집중, 늦거나 불확실한 상황판단으로 인한 대응능력 부족, 서툰 감정표현 및 의사소통으로 원만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 지적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공공으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고, 이들에게 특화 또는 맞춤형 교육도 제공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서울시에서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평생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여짐.
- 본 센터의 위탁사무를 보면, 대상자 선별, 상담, 가족상담 등으로 개인별로 상이한 지능, 집중도, 기억력, 판단력, 인지력 등에 따라 개별적 처방 또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 분야에 전문성 뿐만 아니라 관련 경험이 충분한 단체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 민간위탁의 대상사무

-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경계선지능인 관련 연구, 교육, 사업(대상자 발굴 및 선별, 상담, 지원, 가족상담 사례관리, 인식개선 등) 등으로 서울시의 사무(조사·검사·검정·관리)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지 않고, 능률성 또는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사료됨.

###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의 위탁사무

-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교재·교구·매뉴얼 등 개발
- 지원대상자 발굴 및 선별, 상담 및 지원, 사례관리, 가족상담
-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 네트워크 구축, 인식개선 사업
- 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등

- 다만, 동의안의 소요예산(12억 7천 5백만원) 대비 평생교육국에서 제출한 민간위탁금(8억 4천 7백만원)은 33.6% 감액된 수준이며, 인력 규모도 14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하고 있어, 당초 계획한 사업을 실행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을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조정 현황 〉

(단위:백만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변경사유
민간위탁금	1,275	847	△428	
인건비	399	298	△101	센터 인력 조정(14명→10명)
	376	274	△102	공공운영비 일부 조정 등
	500	275	△225	연구개발비, 청소년 및 청장년 프로그램 사업의 단위사업비 고려 조정 등

- 특히, 사업비의 변경사유는 ‘단위사업비를 고려한 조정’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감액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사업비의 감액은 적정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보장할 수 없는바, 사업비의 조정이 적정한 규모인지, 당초 계획한 목표를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중 ‘사업비’ 조정 현황 >**  
(단위:백만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증감률
사업비	500,000	275,000	△225,000	45.0%
청소년 및 청장년 대상 사업	280,000	160,000	△120,000	42.9%
연구개발비	150,000	80,000	△70,000	46.7%
지능검사지 등 구입	20,000	10,000	△10,000	50.0%
네트워크 구축				
지원인력 역량 강화				
정책토론회				
인식개선 및 홍보				
	50,000	25,000	△25,000	50.0%

- 민간위탁관리지침(2021. 10.) 및 예산의 사전절차 이행원칙에 따르면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향후 정례회 전 동의안 의결을 받도록 하는 평생교육국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시의회 동의 및 보고 안건”은 “시의회 하반기 정례회(다음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개최되는 회기) 이전 회기에 상정”될 수 있도록 운영평가위원회 회차 선택

▶ 법령이나 조례 제·개정,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회 동의과정에서의 보류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동시에 상정 가능

출처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1.10.) 20p 빨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910
------------	------

제출년월일 : 2021년 10월 1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가.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고자 함

※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함(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2조)

나. 본 센터는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 인식개선 사업, 정책연구, 네트워크 구축, 지원대상자 발굴, 상담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시설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7조(위탁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6조에 의거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6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 및 제7조(위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는 전연령 대상 시설로서 이용자 특성이 다양하며 경계선지능인 선별, 본인 및 가족 상담, 사례관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됨
- 경계선지능인 관련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 나. 위탁개요

-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관리 운영
-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2022. 4. 1. ~ 2024. 3. 31.)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선정(신규위탁)
- 소요예산(위탁금) : 1,275백만원('22년)
  - 인건비 399백만원('21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원)
  - 운영비 376백만원(인테리어 및 사무기기 등 구입, 공공운영비 등)
  - 사업비 500백만원(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인식개선 사업 등)

#### 다. 위탁사무 내용

-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교재·교구·매뉴얼 등 개발
- 지원대상자 발굴 및 선별, 상담 및 지원, 사례관리, 가족상담
-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 네트워크 구축, 인식개선 사업
- 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등

#### 라. 시설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예정)
- 규 모 : 300m<sup>2</sup> 내외
- 공간구성(안) : 교육장, 상담실, 사무실, 이용자 휴식공간 등
- 이 용 대 상 : 경계선지능인 및 그 가족, 관련기관 종사자 등

#### 마.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6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

-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탁 등)

-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민간위탁 예산편성 예정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사업팀 임소진 (☎ 2133-3972)